

의안번호	2212911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5. 9. 16.
추 계 번호	25C50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500만원, 2030년 2억 8,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3억 1백만원(연평균 2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0조의3 (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145	289	289	289	289	1,301	260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 평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3 (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 시·도지사 소속으로 <u>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u>하여 약국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약국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약사회의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3 (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2025년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¹⁾에 따라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약국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민간위원 17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함
 - 회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고려하여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다만,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2026년 7월에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2026년에는 연간 개최되는 회의의 절반(대면회의 2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 약국개설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3억 1백만원(연평균 2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0조의3 (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145	289	289	289	289	1,301	260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와 평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